

의안번호	제 258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12월 일 (제305회)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임 현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1년 12월 2일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임 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
----------	-----

발의연월일 : 2011년 12 월 2일
발 의 자 : 임 현, 권기수, 김동환,
김재중, 이광진, 이수완,
임현경

1. 제정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시설 등의 정의(안 제2조)
- 도지사, 도민의 책무 등(안 제3조, 제4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6조)
- 전담부서, 자전거도로의 설치(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등(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3. 조 례 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비 용 추 계 서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균형건설국 도로과와 협의

7.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11. 11. 10. ~ 11. 29.)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4.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자동차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복잡한 장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행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및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 시장·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6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검토하여 도, 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담당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의 신도시, 관광단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2.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 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전까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전거주차장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③ 개인,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3조(자전거대여소 설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버스정류장, 철도역,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개인·단체 등이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홍보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때에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 시범직장·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통근·통학로에 자전거교통안전표지, 자전거 횡단도,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등)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개인·단체 등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일정

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기여자 포상)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이용활성화 기여자의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전거의 등록) ① 시장·군수는 법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등록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시설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토·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군수는 주민자치센터 또

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령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나. 기증, 공공자전거(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공공자전거로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매각대금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3.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 수반요인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한 경비 등

2. 비용 추계의 전제

- 도차원의 종합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은 5년마다 수립하며, 자전거이용 시설의 여건개선과 확충을 위한 시·군의 시책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기계획을 반영하여 예상 사업비를 산정하되, 도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예산 배분에 따라 변동
- 그리고 국가 정책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의 경우는 진행중인 사업과 교부세 지원금액을 참고하였음
-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시군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은 비용 추계에서 배제하였음.

3. 비용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2	'13	'14	'15	'16	총계
계	6,600	5,790	5,590	5,590	5,590	29,160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수립	-	200	-	-	-	200
자전거도로 확충	2,750	2,000	2,000	2,000	2,000	10,750
자전거인프라 구축	3,750	3,490	3,490	3,490	3,490	17,710
자전거활성화 시책 추진	100	100	100	100	100	500

※ 비용추계 대상사업 내역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 활성화 5개년 계획
- 자전거도로 확충(이용활성화) : 자전거도로 정비
- 자전거인프라 구축 :
 - 국가 자전거도로망
 -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 자전거활성화 시책 :
 - 자전거관련 행사 추진
 - 시범기관 지정, 운영
 - 민간단체 지원 등

4. 부대의견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시책에 부합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보호하고, 도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역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5. 작성자

작성자	충청북도의회 임 현 의원
연락처	사무실 : 043) 220 - 5132 E-mail : limh@cb21.net

II. 비용 추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자전거도로 확충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자전거 활성화 시책추진	합계
합계	소계	200	10,750	17,710	500	29,160
	국비			8,480		8,480
	도비	200	3,225	375	250	4,050
	시군비		7,525	8,855	250	16,630
'12년도	소계		2,750	3,750	100	6,600
	국비			1,500		1,500
	도비		825	375	50	1,250
	시군비		1,925	1,875	50	3,850
'13년도	소계	200	2,000	3,490	100	5,790
	국비			1,745		1,745
	도비	200	600		50	850
	시군비		1,400	1,745	50	3,195
'14년도	소계		2,000	3,490	100	5,590
	국비			1,745		1,745
	도비		600		50	650
	시군비		1,400	1,745	50	3,195
'15년도	소계		2,000	3,490	100	5,590
	국비			1,745		1,745
	도비		600		50	650
	시군비		1,400	1,745	50	3,195
'16년도	소계		2,000	3,490	100	5,590
	국비			1,745		1,745
	도비		600		50	650
	시군비		1,400	1,745	50	3,195